論 壇

火災保險 保險金 支給方式에 관한 考察

李 基 亨
(保險開發院 調査研究室 · 損害保險調査擔當役)

◀ 目 次 ▶

Ⅰ. 머리말
Ⅱ. 危險管理와 保險制度
1. 危險財務技法으로서 保險
2. 付保形態에 따른 保險分類
Ⅲ. 損害補償原理와 保險保護率
1. 損害補償原理
2. 保險保護率
Ⅳ. 保險金 支給方式
1. 比例補償方式
2. 實損補償方式
3. 再調達價額方式
4. 價額協定保險方式
5. 在庫價額通知保險方式
6. 支給方式別 比較
Ⅴ. 保險金支給方式의 改善方向

Ⅰ. 머리말

火災保險은 상품체계상 國文約款과 英文約款의 二重構造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인 해결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양 상품간의 料率適用 및 商品內容上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內在的인 문제외에도 保險價格自由化 推進(1995년부터 2년간 範圍料率을 적용한후 97년에는 自由料率로 轉換), 保險市場 開放으로 외국사의 國內市場 參與 및 국내사의 海外市場 進入, 再保險의 自由化 등이 현실화될 전망이어서 對內外的인 對應方案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本考에서는 火災保險의 수요를 증대할수 있는 부분, 즉 保險給付에 관하여 계약자가 느끼는 保險制度의 效用과 관련하여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保險制度의 效用은 가계와 기업의 安定圖謀 및 信用提高, 個別經濟의 資本 維持 및 收入의 確保, 國際經濟交流를 促進하는 등의 經濟的 側面과 事故의 事前防止, 富의 再分配 等의 社會的 側面에서의 效用이 있다. 기업 또는 개인의 資產에 대하여 火災損害를 補償하는 火災保險은 이러한 效用의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는 危險을 정확히 分析, 評價하여

어느 정도를 보험에 가입하고 保有해야 하는 가를 保險制度의 여러가지 계약방식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결정해야 保險의 效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未評價保險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火災保險은 事故가 발생했을 때 一部保險 또는 超過保險으로 인하여 계약자의 이해를 구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財物保險의 特性上 保險의 目的의 價額은 保險期間동안 물가변동 등의 요인에 의하여 계약시의 價額과 사고시의 價額과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결과 一部保險일때는 比例補償으로 인하여 保險의 效用이 半減되며 超過保險일 경우는 超過部分만큼의 불필요한 保險料의 지출이 되므로 계약자의 보험에 대한 信賴度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普通約款에 80% 實損補償制度를 도입한바 있지만 保險加入金額이 保險價額의 80%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건물의 경우 과거의 목조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반해 현대에는 耐火構造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계약자와 保險者가 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保險金 支給方式을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比例補償方式이외의 保險金 支給方式은 계약자의 危險轉嫁方法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實損補償特約, 再調達價額特約, 協定保險價額特約, 價額協定擔保特約 등의 特殊方式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保險金 支給方式의 각각에 대하여 槪念的인 比較, 分析, 考察을 통하여 향후 保險環境變化에 능동적인 대응 및 계약자의 니드에 부응할수 있는 商品開發方向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II. 危險管理와 保險制度

1. 危險財務技法으로서 保險

계약자가 지닌 다양한 危險을 처리함에 있어 가장 重要하게 利用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保險制度인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企業의 危險管理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조직에서 발생할수 있는 損害可能性을 체계적으로 把握, 分析하여 그에 대응하는 最適方案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주요대상위험은 純粹危險(Pure Risk)[1]이다. 危險處理(Risk Treatment)는 기업에 내재하는 위험을 파악,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最適의 危險管理 技法을 選擇, 實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된다. 아울러 危險管理技法은 기업의 존속 등의 危險管理目的에 부합되도록 危險統制(Risk Control) 또는 危險財務(Risk Financing)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들을 결합하는 등이 해당된다.

危險財務(Risk Financing)는 危險統制(Risk Avoidance, Loss Prevention)노력에도 불구하고 罹災가 발생했을 경우 損害補塡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危險保有(Risk Retention)와 危險轉嫁(Risk Transfer)가 있으며 危險保有는 기업(또는 계약자)이 예상되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保有하여 손해발생시 直接 損害를 부담하는 危險管理技法을 말하며 保有形態는 積極的 保有(Active Retention)와 受動的 保有(Passive Retention)로 구분된다. 受動的 保有는 無意識中 危險을 保有하여 保有自體가 우연

1) 純粹危險은 損害의 可能性만 있고 이득이 없는 危險으로 Property Risk, Personal Risk 및 Liability Risk로 分類되며 投機危險(Speculative Risk)은 損害可能性과 利得의 可能性이 併存하는 危險을 말한다. R.L. Carter, Risk Management, the CII Tuition Service, 1981, p.5

인 경우가 해당되며 積極的 保有는 계약자가 意圖的으로 危險을 保有하는 것을 말한다.[2]

계약자는 危險을 파악, 분석, 평가한 결과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경우, 最大損害額의 규모가 크지 않는 경우 또는 손해에 대한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危險을 保有하게 된다. 여기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경우의 危險保有는 위험이 巨大化 또는 不良化되어 保險加入이 곤란하거나 또는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일부만 가능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그 危險을 自己保有하여 손해발생시 직접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때이다.

最大損害額의 크기가 적은 경우의 危險保有는 손해액 크기가 적어서 기업이 직접 損害를 自己負擔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경우 豫想損害額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유할 것인지를 기업의 자금사정 등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火災事故時 最大可能損害額이 價額의 60%인 時價 100억원의 耐火構造建物을 火災保險에 付保하는 방법에 따라 保險料 支出과 保險給付上 현저한 차이가 드러난다. 保險料率이 0.1%일때 保險料의 차이는 60%부보시 100억원×60%×0.1%=600만원이며 전액부보시 100억원×100%×0.1%=1000만원으로서 400만원의 차이가 나고 또한 사고시의 보험금부상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 기업내의 현금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損害에 대한 豫測이 어느정도 가능한 경우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통계자료 등에 의하여 損害豫測이 가능하면 손해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가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의 대표적인 것인 自家保險(Self Insurance)이다.

이와 같이 危險保有는 被保險利益의 價額에 대하여 自己負擔率이 항상 있는 것을 의미하는 데 火災保險에서는 危險保有能力이 있는 계약자를 위하여 Coinsurance(國文 및 英文約款), Deductible(英文約款), Limit of Liability(英文約款) 등의 危險共有(Risk Sharing)制度[3]를 운영하고 있다.

保險에 의한 危險의 轉嫁, 즉 保險計劃은 기업의 욕구에 부응하고 繼續的 企業으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資金調達을 원활히 할수 있는 最適의 方法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보험계획은 損害發生確率(Loss Frequency)은 낮으나 損害規模(Loss Severity)가 매우 큰 危險에 대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위험관리자가 保險制度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保險商品의 選擇, (2)保險者의 選擇, (3)約款構成內容, (4)選擇한 保險商品에 대한 企業內部組織에서의 충분한 理解, (5)保險商品에 대한 정기적 검토등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중 保險付保時 가장 중요한 것은 保險商品의 選擇이라 할수 있다. 즉, 기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危險管理政策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예산상의 문제로 企業의 財產上의 危險, 賠償責任危險, 人身事故危險, 企業休止危險 등의 여러가지 위험중 특정한 위험만 선택하거나 또는 충분한 保險給付가 되지 않도록 설계할때는 危險管理 目的에 부합치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2) C.Arthur Williams, JR., Richard M.Heins,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6th ed.), McGraw-Hill, 1989, pp.226-232

3) C.A.Williams, G.L.Head, C.W.Glendenning, R.C.Horn,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2nd ed)., Vol II, Pennsylvania : American Institute for Property and Liability Underwriters, 1981, p.159

있다. 財産損害擔保 保險商品의 선택시에는 財物保險의 특성상 比例補償方式에 의한 保險金 支給基準이 적용되어 被保險利益의 付保 程度에 따라 罹災復舊의 신속성 및 자기자금의 지출정도가 결정되므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木造建物을 火災保險에 가입하는 경우 全部保險이 아닌 一部保險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고시 一部保險으로 인하여 自己保有部分에 대한 기업내의 자금의 추가지출이 발생된다. 그 결과 기업의 收入安定(Stability of earnings)이 곤란케 되어 계속적인 성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나아가 기업의 존속까지 위협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保險加入 意思決定에 있어서는 保險原價, 保險者의 支拂能力 및 經營安定性, 保險者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비교하여 保險會社를 선택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즉 保險의 效用과 관련시켜 保險付保를 하는 것이다.

保險의 效用은 최소의 費用(保險料)으로 최대의 效果(損害保障)를 얻고자 하는 경제적 욕망을 가능케 함에 그 의미가 주어진다. 가장 效果的인 危險管理技法은 自己引受, 自家保險이지만 이는 자기의 경제적 능력으로 위험을 보장받고자 하는 자위수단이므로 위험의 결과인 손해에는 자기의 능력범위를 한도로 하여 전보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러한 各種 危險에 대응할 自己引受 내지는 自家保險이 순차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자기에 의한 보장은 사실상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財産上의 損害에 대한 경제적 보장을 해주는 보험계약에서도 일정액이내에 損害가 발생하는 경우는 당연히 自己負擔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며 그 부분의 손실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危險을 引受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Risk Control과 Risk Financing이 충분히 가능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經濟準備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保險制度이지만 法律面, 經濟面, 技術面에서 限界性[4]이 있다.

2. 付保形態에 따른 保險分類

가. 旣評價保險과 未評價保險

(1) 旣評價保險

旣評價保險(Valued Policy)은 계약체결시 계약자와 보험자간에 保險價額을 협정하고 事故가 발생하는 경우 付保物件이 全損일 때 實際損害額(Actual Cash Value)에 관계없이 계약된 金額(face amount of insurance)을 지급하는 保險契約을 말한다.[5] 또한 商法 제670조에서는 당사자간에 保險價額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추정하나 그 가액이 事故發生時의 價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는 사고발생시의 價額을 保險價額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旣評價保險은 주로 海上保險[6] 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방식이지만 未評價保險인 火災保險에서도 예외로써 미술품, 골동품등 특수한 目的物에 한하여

4) 龜井利明, 「保險總論」, 法律文化社, 1991 ,pp.34－40

5) George E. Rejda, Principles of Insurance(2nd ed.), 1986, Scott, Foresman and Company, London, p.69

6) 海上保險은 保險의 目的인 船舶,積荷는 時間的으로 恒常 移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항상 變하게 되며 罹災當時의 事故를 推定하는 것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商法 第696條, 第697條에는 船舶은 保險者의 責任이 開始될때

적용된다. 適用對象 保險目的物은 保險契約 締結時에 保險價額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保險事故가 발생한 경우 實際의 現金價額을 정확히 評價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保險事故가 발생한 때는 保險金 算出上 保險價額의 評價가 필요하나 진정한 保險價額을 평가,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를 사전에 회피하여 신속, 원활한 保險金의 支給을 위하여 保險價額을 협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家計性 火災保險에서는 船舶保險 등에 비교하여 價額이 낮아 보험료가 少額이고 평가 비용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旣評價保險의 일종인 價額協定擔保特約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7]

旣評價保險이 인정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保險價額의 입증이 용이하고 손해사정시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旣評價保險에서 協定保險價額은 保險證券에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으며[8] 保險者는 보험사고시의 價額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約定한 保險價額에 따라 산정한 損害를 補償한다. 그러나 協定한 保險價額이 실제 가액보다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사고시의 가액으로 한다(商法 제670조 단서). 旣評價保險의 효력의 중요한 예외는 評價額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保險者는 이를 입증하여 보상액의 감액을 청구(商法 제669조)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상회한 것이 현저하다고 보는 가는 사실문제로서 被保險利益의 종류나 성질, 기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객관적인 표준에 의한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保險價額의 協定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民法의 原則이 적용되어 계약자의 詐欺에 의한 協定인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保險者는 協定保險價額이 현저히 과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 이 사유에 대하여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評價額을 표시한 이상 이에 반하는 주장은 할 수 없다는 禁反言 原則에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過大評價가 보험자의 주도적인 고의, 과실에 의한 것 , 계약자가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禁反言 原則이 강하게 적용된다. 保險募集에 있어서 대리점이 保險價額의 평가시 故意, 錯誤, 不注意 등에 의해 부당한 가액을 설정하여 청약서에 기재하고 保險者가 이를 보험증권에 기재하였다면 보험자는 후일 부당한 가액을 이유로서 평가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가 없다. 다만, 過大評價가 현저히 過大하거나 계약자의 사기적 의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9]

(2) 未評價保險

未評價保險(Unvalued Policy 또는 Open Policy)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被保險利益의 가액에 대하여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아니한 보험으로서 대부분의 財物保險이 이에 해당된다. 火災保

의 船舶價格을 保險價額으로 하며, 積荷는 船積한 때와 場所의 積荷의 價額,船積 및 保險에 관한 費用을 保險價額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金政秀,「海上保險論」, 傳英社, 1987, p.25).

7) 美國의 境遇 Arkansas, California, Florida州 等 19個州에서는 住宅火災保險에 旣評價保險이 義務化되어 있다. George E. Rejda, Ibid, p.87

8) 商法 第685條 3(火災保險), 第690條 5(運送保險), 第695條 3(船舶保險)에서는 保險價額을 정한 때에는 그 價額을 保險證券에 記載하도록 하고 있다.

9) 梁承圭,「保險法」, 三知院, 1987, p.175

險에 있어서 오랜기간동안의 관행으로서 未評價保險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0]

- 간소한 계약체결로 인한 신속화와 저렴화이다. 여러단계의 절차,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여 개별로 評價, 協定을 하면 이에 수반하는 費用이 막대하게 되므로 이 費用을 附加保險料에 가산시 보험료가 증가하는것을 피하기 위한 保險技術上의 理由이다.
- 평가가 낮게 또는 과대하게 됨으로서 道德的 危險을 발생케 하므로 損害補償原則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未評價保險은 보험사고발생시에 被保險者의 보험금 수령에 관한 기대를 종종 저버리게 된다. 예를 들면 保險價額이 보험계약체결후 증가한 때 당초 全部保險이었더라도 一部保險이 되어 比例補償이 적용되게 되며 역으로 保險價額이 하락한 경우 超過保險이 되어 保險金額이 保險價額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이 결과 보험금 지급시 被保險者와 保險者간의 마찰을 빚게 되는 것이다.[11] 商法 제67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保險價額은 時價主義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保險者가 補償할 損害額은 그 손해가 발생한 장소와 때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 損害額을 전제로 하여 保險價額의 算定基準을 간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火災保險에서 未評價保險의 관행은 商法 原則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付保金額과 保險價額에 의한 分類

保險價額은 財物保險에서 被保險利益의 평가액, 즉 被保險利益을 금전상으로 평가한 價額으로서 보험기간동안 원칙적으로 일정한 것은 아니며 景氣의 變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保險은 事故로 인하여 被保險利益에 생긴 損害를 補償하는 것이지 被保險者에게 이득을 주려는 경제제도가 아니므로 被保險利益의 價額以上으로 손해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保險價額은 保險者가 補償할 損害額의 법률상의 최고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商法 제671조는 당사자 사이에 保險價額을 정하지 아니한 未評價保險인 경우에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保險價額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未評價保險에서는 保險加入金額과 保險價額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분류된다.

(1) 一部保險(Under Insurance)

一 部保險은 保險加入金額이 保險價額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一部保險은 보험계약체결당시부터 保險料를 절약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의식적으로 보유하는 積極的 保有形態가 있고, 또 계약성립후 物價上昇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一部保險에서는 付保되지 않은 부분은 계약자가 自己負擔해야 한다. 商法 제674조에서는 保險價額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保險者는 保險加入金額의 保險價額에 대한 비율에 따라 補償責任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2) 全部保險(Full Insurance)

全部保險은 保險加入金額과 保險價額이 동일한 계약을 말한다. 未評價保險으로 운영되는 財物保

10) 安全火災海上保險(株),「火災保險の理論と實務」, 東京, 海文堂, 1991, pp.124－128

11) 保險金支給과 關聯하여 保險監督院의 民願處理件數比率은 自動車保險 84%, 保證保險 85%, 火災等 66%로 나타났다(姜元熙, 損害保險에 있어서의 競爭力問題 ,「保險學會誌」, 1994년 3월호, p43).

險에 있어서 실질적인 全部保險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被保險利益의 가치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기변동, 가치하락, 사용에 따른 감가, 진부화 등에 의하여 변경되므로 계약체결시의 保險加入金額과 사고시의 保險價額은 일치할 수 없다.

(3) 超過保險(Over Insurance)

超過保險은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保險加入金額이 被保險利益의 評價額인 保險價額을 현저하게 超過한 保險契約을 뜻한다(商法 제 669조 1항). 이같은 형태는 계약체결당시부터 超過하는 경우, 또는 경기변동으로 被保險利益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단순한 超過保險과 계약자의 詐欺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詐欺的 超過保險으로 분류할 수 있다. 超過保險의 판정여부는 保險加入金額이 保險價額을 현저하게 超過하여야 하나(商法 제669조 1항) 이 여부는 거래의 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사실문제이다.

單純 超過保險인 경우는 保險加入金額이 保險價額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당사자가 선의인 때 계약당사자는 保險料와 保險加入金額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商法 66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기에 의한 超過保險인 경우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로 처리된다(商法 669조 4항). 그러나 계약자가 불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의로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다. 계약자의 사기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기로 판명된 경우에는 超過部分뿐 아니라 그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保險事故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전혀 責任을 지지아니하며 계약자는 保險者가 그사실을 안 때까지의 保險料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商法 669조 4항 단서)[12]

(4) 重複保險(Double Insurance)

重複保險은 계약자가 2개사 이상의 보험자와 同一한 被保險利益에 대하여 保險契約을 체결하고 그 保險加入金額의 총액이 保險價額을 현저히 초과하는 保險契約을 말한다. 重複保險은 高額物件 소유 계약자가 1인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保險者만으로 罹災時 復舊가 불안한 때에 數人의 保險者와 保險契約을 체결하거나 자기를 위한 保險契約을 체결하였을 때 또는 제3자가 타인을 위한 保險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발생할수 있으며 保險價額이 없는 人保險에서는 重複保險槪念이 성립되지 않아 道德的 危險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다.

重複保險은 被保險利益과 保險事故가 동일, 保險期間이 동일 또는 중복, 수개의 保險契約을 2인 이상의 保險者와 체결하고 그 保險加入金額 合計가 保險價額을 초과하여야 할것 등이 성립요건이 된다. 重複保險인 경우의 保險金 支給方式은 優先責任主義方式, 保險金額比例補償方式, 連帶責任補償方式이 있다.

Ⅲ. 損害補償原理와 保險保護率

1. 損害補償原理

火災保險契約은 保險者가 계약자로부터 위험을

12) 梁承圭, 「前揭書」, p.173-175

인수하여 火災事故로 생긴 被保險者의 財産上의 損害(Actual Cash Value)를 담보하는 損害補償原則(principle of indemnity)이 적용된다. 이 損害補償原則에 근거하여 被保險者는 保險事故로 입은 손해보다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利得禁止原則이 保險制度에 있어 公理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원리로 運用되고 있다. 利得禁止原則은 보험제도의 賭博化를 방지하고 인위적으로 사고를 유발시킬 주관적인 위험, 즉 道德的 危險(Moral Hazard)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旣評價保險, 再調達價額保險, 生命保險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13] 결국 火災保險은 利得禁止原則에 따라 火災事故로 인하여 被保險者의 財物에 經濟的 損害가 발생한 때 損害補償原則으로서 比例補償原則이 적용된다.

比例補償原則(principle of average)은 保險加入金額(S)에 대한 保險價額(V)의 比率을 기초로 하여 損害(L)를 補償(M)한다는 것을 말한다.

$$M = \frac{S}{V} \times L \qquad (0 \leq S/V \leq 1) \cdots\cdots\cdots\cdots ①$$

商法에는 "保險價額의 일부를 보험에 부보한 경우에는 保險者의 부담은 保險加入金額의 保險價額에 대한 比率에 따라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實損補償原則은 保險加入金額을 한도로 損害額 全部를 보상한다는 방법이다. 이러한 계약방식을 實損補償契約(Specific Policy)라 한다.

$$M = L \qquad (\leq S \leq V)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②$$

比例補償方式은 15,6세기경 海上保險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實損補償方式은 영국의 火災保險契約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주요국의 보험관련법규에서 損害保險에 대한 比例補償原則은 日本商法 제636조, 獨逸 保險契約法 제56조, 스위스 保險契約法 69조 2항, 프랑스 保險契約法 31조, 英國 民法 제1907조 및 海上保險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다.[14]

가. 一部保險

一部保險은 保險加入金額이 保險價額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즉 保險加入金額(S)部分은 保險者에게 위험을 전가한 부분(付保率 α)이고 保險價額과의 차액은 계약자가 自己負擔한 金額 N (自己負擔率 β)으로 계약을 체결한 형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

$$V = S + N \qquad (0 < S < V) \cdots\cdots ③$$

$$1 = \frac{S}{V} + \frac{N}{V} = \alpha + \beta \qquad (\alpha < 0, \beta < 0)$$

一部保險에서 保險金은 比例補償原則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된다.

$$M = \frac{S}{V} \times L \qquad (\leq S < V) \cdots\cdots ④$$

이경우 損害額과 保險價額과의 대소관계에 따라 全損(L=V)과 分損(L<V) 2개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1) 全損(Total Loss)

全損일때는 損害額과 價額이 동일할 때이므로

13) George E. Rejda, Ibid, p.69

14) 谷山新良, 比例補償の原則, 「損保研究」, 第261號, 1985.10,

保險金은 ④식에 의하여 保險加入金額과 동일하게 된다.

$$M = \frac{S}{V} \times V = S \qquad (<L=V) \cdots\cdots ⑤$$

이때에는 계약한 保險加入金額이 全額補償되기 때문에 계약자는 만족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保險價額이 현저히 변동하여 계약이 一部保險 또는 超過保險이 된 경우에는 保險金이 격감하게 되어 계약자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2) 分損(Partial Loss)

分損일때는 損害額에 대한 價額比率이 1보다 적은 경우(L/V<1) 이므로 ④식의 比例補償方式에 따라 保險金은 다음과 같이 된다.

$$M = \frac{S}{V} \times L \qquad (<S)$$

〈그림-1〉 保險形態別 保險金差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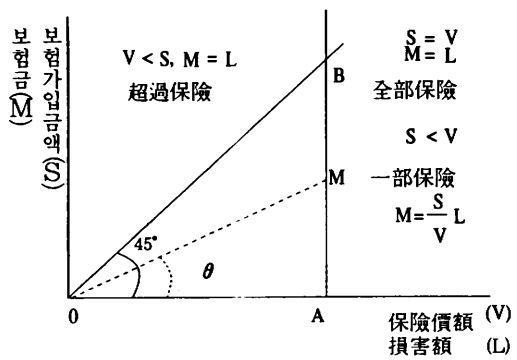

〈그림-1〉에서 점직선 OM은 比例補償保險金의 그래프이며 실선 OB는 全部保險의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tan\theta = S/V = \alpha$는 付保率이 되며 $\tan 45° - \tan\theta = 1 - \alpha = \beta$(自己負擔率)이 된다. 즉 L=OA=AB=AM+MB=M+B=保險金+自己負擔金이 되므로 一部保險에 있어서는 항상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된다.

損害額 = 保險金 + 自己負擔金

$$L = \alpha L + \beta L = M + B \cdots\cdots ⑥$$

그러나 일반적으로 家計性保險은 企業性保險에 비해 계약자나 被保險者가 比例補償原則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도 통상 계약시점에 있어서는 이 원칙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保險事故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保險者가 保險加入金額을 한도로 당연히 實損害額 全部를 補償하여 주는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期待値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M = L \leq S \text{ 또는 } M = S < L \cdots\cdots ⑦$$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되지는 않고 ⑥식에 의하여 보상하게 된다. 즉 期待値보다도 $\beta L = B$ 만큼 적게 보상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被保險者는 保險者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保險價額(V)이 계약시점에서의 價額(V_0)에 비하여 현저하게 변동한 때는 그 불신도가 더욱 크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설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價額이 증대한 때($V > V_0$)

계약체결시점에서 全部保險($S = V_0$)으로 체결했더라도 인플레이션이나 개발이익등의 사정에 의하여 保險價額(V)이 증대하게 되면 곧 바로 一部保險($S = V_0 < V$)이 되므로 約款에 정한 比例補償原則이 적용되어 기대한 保險金(M_0)보다 적은 保

險金(M)이 지급된다.

期待保險金 $M_0 = \frac{S}{V_0} \times L = L \quad \leq S = V_0$

實際保險金 $M = \frac{S}{V} \times L = L \quad \leq S = V_0 (< V)$

즉 계약자는 $\triangle M = M_0 - M = L - (S/V)L = (1 - S/V)L = (1 - V_0/V)L$만큼 保險金을 적게 지급되는 것과 같다. 이 기대손실액 $\triangle M$ 은 保險價額(V)이 크게 되면 될수록 價額變動率 V/V_0이 크게 되어 L에 수렴하게 된다($0 \leq M \leq L$).

2) 價額이 減少한 때($V < V_0$)

위 1)과는 반대로 디플레이션이나 환경악화 등으로 인하여 가액이 계약체결시보다 감소하면 超過保險($V < V_0 = S$)이 된다. 이때에는 보험에 의하여 부를 축적할수 없다라는 保險公理 및 商法 條項에 의하여 超過部分($D = S - V$)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保險加入金額을 保險價額까지 감액하여 全部保險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實際保險金(M)은 期待保險金(M_0)보다도 적게 나타나게 된다($M < M_0$). 즉

期待保險金 $M_0 = \frac{S}{V_0} \times L = L \quad \leq S = V_0$

實際保險金 $M = \frac{V}{V} \times L = L \quad \leq V < S = V_0$

이때의 기대손실액 $\triangle M$은 $0 \leq \triangle M \leq D = S - V \leq S$가 되기 때문에 保險價額이 적게 되면 될수록, 변동율(V/V_0)이 크게 되면 될수록 기대손실액($\triangle M$)은 크게 되며 保險加入金額(S)에 수렴하게 된다($0 \leq \triangle M \leq S$). 따라서 계약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높아가게 된다.

나. 全部保險

保險加入金額(S)이 保險價額(V)과 같을 때 즉, $S = V$, 付保率 $\alpha = 1$, 自己負擔率 $\beta = 0$일 때를 말한다. 이 경우 保險金은 比例補償公式에서 $S = V$이므로 다음과 같이 實損補償받게 된다.[15]

$$M = \frac{S}{V} \times L = \frac{V}{V} \times L = L \ (\leq S = V) \cdots ⑧$$

1) 全損일 때($L = V$)

全損일 때는 $L = V$이므로 保險金(M)은 保險加入金額 S가 된다.

$$M = L = S = V$$

2) 分損일 때($L < V$)

分損일 때는 $L < V$이므로 保險金(M)은 L이 되어 保險加入金額 限度로 實損補償받게 된다.

$$M = L < S = V$$

즉 全部保險일 때는 全損이든 分損이든 관계없이 완전한 實損補償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이며 원칙은 어떠하든 比例補償原則이 적용된다. 즉 全部保險이므로 付保率이 1이 되며 이를 比例補償公式에 적용하면,

$$M = \frac{S}{V} \times L = \frac{V}{V} \times L = L \qquad (\leq S = V)$$

15) 船舶保險, 貨物保險, 航空保險에서는 通常 保險契約締結時에 保險價額을 評價協定하고 保險金額에 一致시켜 全部保險形態로 運營하는 旣評價保險이다. 이는 保險의 目的이 移動하기 때문에 保險事故가 發生한 때와 場所의 價額을 評價決定하는 것이 困難하고 紛爭이 頻發하므로 이를 豫防키 위함이다.

이 되어 공식 ①식의 극한적인 경우가 되는 것이다.

다. 超過保險

超過保險은 保險金額이 保險價額보다도 큰 때를 말하지만 이러한 계약의 발생은 全部保險으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기간동안 保險의 目的의 價額이 급격히 하락한 경우 또는 가액 변동이 없는 保險의 目的에 대하여 계약시부터 超過保險으로 부보한 경우에 발생한다.

保險金額이 保險價額을 超過하는 部分 D=S−V는 商法 제669−4항에 의거 무효로 된다. 즉 超過部分 D는 被保險利益(Insurable Interest)이 없어 위험이 없는 결과와 동일하므로 保險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保險의 基本原理에 입각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超過保險은 全部保險이 되는 결과 保險金 (M)은 ①식에 적용하여

$$M = \frac{S}{V} \times L = \frac{V}{V} \times L = L \qquad \leq V \ (<S)$$

가 되며 實損補償된다. 이와 같이 어떠한 보험형태에서도 比例補償原則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라. 重複保險

火災保險에서는 重複保險이 있는 경우 商法 제672조 및 普通約款 제16조에서 同時契約이나 異時契約을 불문하고 重複保險契約에 대하여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保險金算出方式(保險加入金額 按分方式, 獨立責任額 按分方式)을 택하고 있다.

保險加入金額 按分方式은 하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保險金 計算方式이 동일한 保險約款에 있어서는 각 계약의 保險加入金額比率에 따라 각 계약의 손해액을 안분하는 방식이다.

獨立責任額方式은 保險金計算方式을 달리하는 重複保險契約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각의 補償額을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이 獨立責任額의 합계액이 당해 保險의 目的의 損害額을 超過한 때는 各 獨立責任額의 比率로 각 契約의 保險金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각 계약의 保險加入金額이 保險價額이하인 경우에는 全損, 分損 與否를 불문하고 두가지 방식의 최종결과는 동일하나 한 계약의 保險加入金額으로도 이미 超過保險이 되었거나 각각의 계약이 超過保險이 된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

2. 保險保護率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經濟主體인 계약자는 保險給付 즉 保險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經濟主體의 필요액과 保險者가 지급하는 實際 保險金과의 비율을 保險保護率이라 한다.

이 保險保護率은 保險給付를 기준으로 하여 Hax가 말하는 有形財產保險[16]에서는 全部保險, 超過保險 및 一部保險이 존재하고 保險給付는 全部保險에서 완전(保險保護率 1)하게 되며 一部保險에서는 比例補償原則이 적용되어 保險保護率은 1 미만이 된다. 따라서 保險保護率을 기준으로 하여

16) Hax는 保險을 人保險과 財物保險(Guter)으로 區分하고 後者를 다시 積極的財產保險(有形財產保險과 權利保險), 消極的保險(賠償責任保險,新價保險)과 利益保險(喪失利益保險,希望利益保險)으로 分類하고 있다. 鈴木讓一, 「保險論」, 損害保險事業硏究所, 1988, p.57

2개의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Mehr와 Gutler는 保險給付와 경제적 손실 또는 배상액과 손실액에 중점을 두어 분류하고 保險給付形態에 따라서 定額保險과 利益保險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利益保險은 보험종목으로서 利益保險(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이 아니고 被保險者의 保險給付에 대한 이해관계 즉 경제필요가 어떻게 충족되는 가라는 관점에서의 보험개념이다.

定額保險은 生命保險의 전형적인 형태이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고 利益保險에서의 保險保護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無制限 利益保險

이 保險에서는 保險加入金額을 설정하지 않고 保險事故에 의한 經濟主體의 實際 經濟的 損失이 아무리 크더라도 保險金은 이와 일치하는 保險으로서 保險保護率은 항상 1이다. 예를 들면 自動車賠償責任保險의 賠償責任限度額이 무한으로서 운영되는 형태를 들수 있다.

나. 第1次 危險保險(First Loss Insurance)

保險價額이 일정한도까지 實際損害와 일치하는 보험으로서 火災保險에 부대되는 實損補償條項이 그 하나이다. 또한 통상의 賠償責任保險, 利益保險等의 費用保險에서 제1차 危險保險이 존재하게 되며 保險保護率은 1이다. 그러나 손해가 일정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리 약정한 保險金을 초과한 경우는 保護率은 1이하이다. 미국의 火災保險은 주로 이 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完全價額保險(Full Value Insurance)

保險加入金額과 保險金이 일치하는 경우가 完全價額保險이며 保險加入金額이 保險價額을 상회하는 경우가 超過保險으로서 양자 모두 保險保護率은 1이 된다. 또한 保險加入金額이 保險價額을 하회하는 경우는 一部保險이며 保險保護率은 1미만이다. 再調達價額保險은 完全價額保險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라. 部分價額保險

保險價額이 존재하지 않는 費用保險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一定比率을 自己負擔케 하고 保險金額과 給付의 상한을 정하여 계약당사자간에 배분하는 보험을 말한다. 完全價額保險에 대응하는 保險으로서 保險價額이외에 申告價額이 정해져 있다. 이 申告價額은 통상 보험가액의 1/2, 1/3, 1/4이며 보험금은 申告價額과 保險價額과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면 상품을 盜難保險에 부보한 경우 申告價額 100, 保險價額 100, 保險加入金額 50(전상품이 도난된 것을 전제)이라 하면 50까지의 손해일 때는 保險保護率이 1이하이다.

部分價額保險이 제1차 危險保險과 다른 점은 신고가액을 80으로 한 때이며(보험기간중 상품의 증가 또는 가치상승에 의한 保險價額이 도난시에 100으로 된 경우) 이 경우에는 比例補償原則이 적용된다. 즉 50의 損害額에 대하여 50(손해액)×(80(신고가액)/100(보험가액))에 의거 40까지 지급되며 保險保護率은 0.8이 된다. 이 部分保險 價額保險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한 제도로서 價額協定保險(Ⅲ의 4 참조)이라는 형식이 있다. 이 보험에서는 가재를 부보하고 付保率은 60%로 정한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價額協定保險에서는 申

告價額은 保險價額과 일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部分保險價額과는 다르며 제1차 危險保險에 포함할 수 있다.

마. 自己負擔金(Deductible)

自己負擔金制度는 國內 國文火災保險에서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美國, 日本 等의 주요국에서는 導入하여 운영하고 있다.[17] 美國의 住宅火災保險, 住宅綜合保險에서는 다음 3가지 自己負擔金制度가 운영되고 있다.

첫째는 直接自己負擔金制度(Straight Deductible)로서 保險價額 1만불 建物에 대하여 500불 自己負擔金인 경우 被保險者가 이를 負擔(保有)하는 것이다. 이경우 損害가 발생하면 保險者는 500불을 공제한 保險金을 支給한다. 두번째 方法은 Franchise Deductible로서 100불의 自己負擔金인 경우 99.9불까지의 損害는 支給되지 않으나 100불을 以上의 損害인 경우는 全額支給하는 方式이다.

세번째는 Hybrid Disappearing Deductible로서 위 2가지 方式을 혼합한 형태이다. 예를 들면 500불까지는 100불을 초과하는 損害額의 125%가 지급된다. 즉 101불의 경우는 超過額 1불의 125% 즉 1.25불이 지급되며 499불의 경우는 超過額 399불의 125% 즉 498.75불이 지급되며 500불이상의 손해는 全損害額이 지급된다.

保險保護率은 Straight Deductible은 항상 1미만이며 Franchise Deductible과 Hybrid Disappearing Deductible은 1 또는 1이하가 된다.

Ⅳ. 保險金 支給方式

1946년 2월 4일 부터 大韓火災(株)가 미군정청의 인가를 받아 사용한 火災保險普通約款은 保險金支給基準으로서 比例補償方式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후 1963년 1월의 제1차 개정에서는 일부보험용어만을 개정하였을 뿐 約款의 형태나 내용은 1946년도 約款의 範疇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였다. 제2차 개정(1969년 11월 26일)은 약관의 순서와 체계를 대폭수정하여 現行 約款의 기초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의 약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約款의 基本體系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 6월 5일에는 火災保險 全物件에 포괄적용하던 普通約款을 火災以外의 爆發, 破裂을 追加擔保 및 80%-coinsurance實損補償體系를 갖춘 住宅火災保險 普通約款을 분리 신설하였다. 이는 火災保險制度內에서 최초로 實損補償槪念이 도입된 것으로서 保險金支給基準 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1988년 4월 1일에 火災保險 普通約款을 적용하는 一般物件과 倉庫物件에도 80%-coinsurance를 도입하여 保險金 支給에 있어 물건간의 衡平維持 및 商品改善을 圖謀하게 되었고 그후 保險金支給基準의 개선으로서 再調達價額擔保特約, 價額協定擔保特約, 實損補償特約의 導入 등으로 保險의 目的의 성질 및 계약자의 危險管理 能力에 따라 지급기준을 선택할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17) 李基亨, 火災保險의 控除金額制度에 관한 硏究, 1992,

〈표-1〉 物件別 補償方式 適用現況(國文契約)

區 分	補 償 方 式	住宅火災保險	普通火災保險		
		住宅物件	一般物件	工場物件	倉庫物件
普通約款	比例補償	1980.6.5	1946	1946	1946
	實損補償(80%)	1980.6.5	1988.4	—	1988.4
特別約款	在庫價額通知特約	—	1970.3.24		
	自己負擔金特約*	—	1976.4.29		
	補償限度額特約*	—	1977.3.29		
	80%實損補償特約**	—	1987.2.25		
	再調達價額擔保特約**	1987.6.30	1987.6.30		
	價額協定擔保特約	1988.2.26	—	—	—
	協定保險價額特約	1988.7.25	—	—	—
	保險金額自動調整*	—	1981.12.31		

註) 1. "*"標示된 補償方式은 FOC(F)등 英文約款에만 적용되는 方式임
2. "**"標示된 補償方式은 英文 및 國文約款 모두 적용되는 方式이나 운영상 차이가 있음

1. 比例補償方式

火災保險은 財物保險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商法에 정한 比例補償原則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普通約款 제15조 (損害額의 調査決定)에 따르면 損害額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의 保險의 目的의 價額에 따라 계산된다. 價額의 評價는 大韓損害保險協會와 업계가 공동으로 작성한 "保險價額 및 損害額 評價基準"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工場物件의 모든 保險의 目的과 其他物件의 動產을 제외한 保險의 目的에 대하여는 80%-coinsurance개념의 도입으로 實損補償體系가 마련되어 엄격한 의미에서 比例補償原則이 적용되는 部分은 工場物件과 其他物件의 動產이 해당된다. 其他物件은 80%-coinsurance개념을 가미한 比例補償原則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가. 工場物件과 其他物件의 動產

工場物件과 其他物件의 動產은 普通約款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하여 比例補償이 적용된다. 罹災時 全部保險 또는 超過保險일 경우에는 保險加入金額과 保險價額이 일치하여 保險加入金額(保險價額)限度로 損害額 全額을 보상한다. 또한 超過保險일 경우 保險價額을 초과하는 부분은 利得禁止原則에 따라 무효이므로 保險加入金額은 保險價額과 일치하게 된다.

$$M=\frac{S}{V}L=L \qquad (\leq S=V)$$

一部保險인 경우에는 발생된 손해액에 保險加入金額과 保險價額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保險金으로 지급한다. 全損인 경우 損害額에 대하여 保險加入金額 限度로 保險金으로 支給하며 分損인 경우 保險價額에 대한 保險加入金額 比率

에 따라 損害額의 일부분을 보상하게 된다. 즉 付保比率이 클수록 支給保險金도 크게 된다.

$$M=\frac{S}{V}\times L \qquad <S$$

나. 住宅, 一般, 倉庫物件의 建物, 機械設備

工場物件以外의 物件은 動産을 제외한 保險의 目的에 대하여는 80%-coinsurance개념이 적용된다. 위 "가"에서는 保險價額의 100%를 기준으로 保險金 支給額을 결정하였으나 동 물건에서는 保險價額의 80%를 가상의 保險價額으로 하여 보험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保險加入金額이 保險價額의 80%이상일때는 保險加入金額을 한도로 발생된 損害額 全額을 보상한다. 단, 保險加入金額이 保險價額보다 많은 경우에는 保險價額을 한도로 지급한다.

$$M=\frac{S}{V\times 0.8}\times L=\frac{V\times 0.8}{V\times 0.8}\times L \qquad (S\geq V\times 0.8)$$

保險加入金額이 保險價額의 80%보다 적을 때는 이 두 금액의 비율에 따라 保險金을 지급하며 이 비율이 감소하면 할수록 보험금은 감소하게 된다.

$$M=\frac{S}{V\times 0.8}\times L \qquad (S<V\times 0.8)$$

2. 實損補償方式

가. 槪要

火災保險普通約款은 保險料 負擔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保險加入金額이 保險의 目的의 價額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保險加入金額에 대한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比例補償方式(Co-insurance Clause)을 채택하고 있다.

實損補償方式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68. 8.20에 인가된 FOC(F) 約款의 實損補償特約(co-insurance clause)이다. 그 후 1980.6.5에 住宅火災保險 普通約款에 80% co-insurance條項을 신설하여 比例補償規定을 완화하였고 1987.2.25에 普通火災保險에 實損補償特約(80% co-insurance)을 도입하여 전물건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계약자를 보호하고 普通約款의 지급기준 개선차원에서 1988.4.1에는 普通火災保險 普通約款에 實損補償條項(80% co-insurance)을 도입[18] 하여 一般物件과 倉庫物件에 적용한 바 있다. 따라서 工場物件은 계약자가 위험관리를 어느정도 한다는 취지에서 同 條項의 적용을 배제하여 普通

〈표-2〉 物件別 實損補償制度(80% coinsurance) 導入現況(國文約款)

구 분	住宅火災	普 通 火 災		
	住宅物件	一般物件	倉庫物件	工場物件
普通約款	1980.4.1	1988.4.1		-
特別約款	없 음	1987.2.27		

주 : 1) 工場物件의 料率係數는 1.2임. 一般, 倉庫物件의 實損補償特約은 普通約款에 導入되면서 削除되었음

2) 英文約款은 付保比率이 80%로 한정되어 있지 않음.

18) 特殊建物(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에 의거 火災保險加入이 義務化되어 있는 建物)은 特殊建物 特約이 1983.12.26 認可되면서 80% co-insurance條項이 導入되었다. 適用物件은 工場物件을 除外한 것으로서 建物에만 適用하도록 하였다.

約款의 比例補償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자가 實損補償을 받기 위해서는 實損補償 特約을 부대하여야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의 耐火構造 建物은 木造建物과 같이 全損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계약자는 火災가 발생할 경우의 豫想最大損害額을 판단하고 그 금액을 부보하기를 원한다. 一般 火災保險에 대하여 이와같은 기준으로 保險加入金額을 설정하여 손해가 난 때에는 比例補償條項에 의하여 一部保險으로 판단하고 손해액의 일부가 保險金으로 지급하게 되나 全損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시가액의 전부를 부보하지 아니하면 保險金 支給에 관하여 계약자의 욕구에 부응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付保比率에 따라 保險加入金額을 설정하여도 보험금을 實損補償하는 契約方式인 實損補償方式이 개발되기에 이른 것이다.[19]

比例補償方式은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보상방식으로서 주요국에서도 타당한 원칙으로 인식되어 保險契約法에 立法化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계약자는 이에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保險加入金額全額에 대한 實損補償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保險者는 比例補償原則에 대한 주지가 철저하지 못하여 比例補償關係로 인한 분쟁이 속출하는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20]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안된 補償方式이 付保比率 實損補償條項 및 價額協定保險契約, 再調達價額保險契約이다. 80% 實損補償條項에 대한 보상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付保比率이 80%이상인 경우($80\% \le \alpha < 100\%$)

이 경우는 保險加入金額을 한도로 하여 實損補償하게 된다. 즉 保險金(A)은 손해액(L)이 된다.

$$A = L \le S \quad (\le V) \cdots\cdots\cdots\cdots ⑨$$

(2) 付保比率이 80%미만인 경우($\alpha < 80\%$)

이 경우는 다음식에 의하여 保險金을 支給한다.

$$A = \frac{S}{0.8V} L = 1.25\,\alpha\, L = 1.25M \cdots\cdots\cdots ⑩$$

이 80% 條項에 의한 保險金(A)과 比例補償原則에 의한 保險金(M)과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항상 $M \le A$이다. 먼저 付保率(α)이 80%이상일 때는 양자의 차가 $\triangle M = A - M = (1-\alpha)L = \beta L$이므로 $0.8 \le \alpha \le 1$에 따라 $0.2L \ge \triangle M \ge 0$이다. 즉,

$$M \le A \le M + 0.2L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⑪$$

이 된다. 付保比率이 80%미만일 때는 $\triangle M = A - M = 1.25M = 0.25\alpha L$이므로 A는 M보다 0.25M만큼 크다.

$$A = M + 0.25M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⑫$$

收支相等의 原則에 의거 80% Co-insurance條項의 純保險料率 Pa는 比例補償의 純保險料 P보다도 ⑪식 및 ⑫식에 의한 만큼 할증되어야 한다 ($Pa > P$). 주지하는 바와 같이 純保險料 P는 收支相等의 原則에 근거하여 산출된다. 保險加入金額을 S, 保險事故發生率을 #라 하면 $P = \#S$이다. 즉 純保險料 P는 수학적 기대치이다. 따라서 比例

19) 日本의 境遇는 1951.12에 付保比率條件附 實損補償特約이 導入되었으며 1972.9.1에는 普通約款에 住宅物件에 適用하는 80%-Co-insurance을 導入하여 運營하고 있다(東京海上火災, 「損害保險實務講座(火災保險)」, 有裵閣, 1993.3, p.338).

20) "損害保險", '93.12월호, 대한손해보험협회, pp.42-43.

補償原則의 純保險料 P는 그 保險金 M의 수학적 기대치이며 80%條項의 純保險料 Pa는 保險金 A의 수학적 기대치이므로 확률론적으로는 각각 等價交換이 되며 손해는 없다.[21]

나. 運營現況

(1) 保險의 目的

實損補償特約의 適用物件은 工場物件中 建物構造가 1,2급인 建物 및 이들에 수용된 設備, 裝置 및 機械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건물내에 수용된 動産 및 屋外設備, 裝置는 적용할 수 없다.

(2) 保險金 支給

同 特約의 保險金 支給은 罹災時에 保險金이 實際付保比率이 約定付保比率에 달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實損補償은 손해발생시에 실제의 부보비율이 約定付保比率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保險加入金額을 한도로 損害額 全額을 지급한다. 이 경우 約定付保比率은 實損補償을 받기 위한 요건이므로 實際의 保險加入金額이 約定付保比率을 초과하더라도 保險加入金額을 한도로 實損補償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비하여 同 特約이 實損補償特約임에도 불구하고 比例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比例補償은 손해발생시에 실제의 부보비율이 約定付保比率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保險價額에 約定付保比率을 곱한 금액에 대한 保險加入金額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이것은 實損補償特約이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保險價額을 협정한 것은 아니고 付保比率에 미달할때 比例補償을 한다고 약정한 것이다.

(3) 保險料率

比例補償을 채택한 계약자에 비하여 同 特約을 부대한 계약자는 保險料를 1.2배 더 지불하여 손해발생시에 實損補償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比例補償과 實損補償方式과의 보험료 및 보험금 차이를 보면 〈표-3〉과 같다.

〈표-3〉 保險料 및 保險金 差異

구 분	比例補償 方式(A)	實損補償 特約(B)	차 이 (B-A)
保險加入金額	100,000,000원	100,000,000원	
保險價額	120,000,000원	120,000,000원	
保險料率	0.1%	0.1%×1.2	
保險料	100,000원	120,000원	20,000원
損害額(1)	80,000,000원	80,000,000원	
(2)	70,000,000원	70,000,000원	
保險金(1)	8,000만×100만/120만=6,666만원	8,000만원	1,334만원
(2)	7,000만×100만/120만=5,833만원	7,292만원	1,459만원

주) 付保比率이 80%일때는 비례보상에 비하여 實損補償特約이 1.2배, 80%미만일때는 1.25배의 保險金 차이가 있다(⑫식 참조).

3. 再調達價額方式

가. 概要

火災保險은 時價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며 保險價額은 再調達價額에서 경년, 손모에 의한 감가를 차감한 時價이며 保險加入金額과 損害額도 이 기준에 의거 산정하는 것이 다년간의 관습이다. 이

21) 實損補償特約 料率算出方法에 대하여는 秋山惠一, 「火災保險論.再保險論」, 損害保險事業硏究所, 1983, pp.141-153.

것은 일반적으로 再調達價額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被保險者에게 이득을 주게 되어 損害保險의 본질에 반하며 道德的 危險을 유발시킬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建物, 機械, 設備裝置 등의 사용재에 대하여는 罹災후 復舊 또는 再調達하는 경제적 필요가 있으므로 新品價額의 지출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時價基準에 의한 지급보험금으로서는 被保險者의 욕구를 만족할수 없으며 별도의 자기자금의 지출이 추가발생하게 된다.

이와같은 時價基準 保險契約에 대한 계약자의 욕구불충족을 충족화시키기 위하여 新品으로의 復舊 또는 再調達費用 全額을 보상하는 再調達價額 擔保保險[22]을 1987년 6월에 도입하게 되었다.

나. 運營現況

(1) 適用物件

保險의 目的을 다음에 限定하여 火災保險 全物件에 적용하며 半製品, 製品, 完製品 등의 在庫商品 및 商品, 家財道具, 敎本, 書畵, 骨董品, 彫刻物, 藝術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減價比率이 50%이하인 建物, 機械, 設備裝置. 다만 減價比率이 30%를 초과하고 建物構造級別이 2급, 3급 또는 4급인 건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 減價比率이 50%이하인 기구, 공구, 집기, 비품. 단 減價比率이 30%를 초과하는 물건은 적용할수 없다.

(2) 保險加入金額

再調達價額保險에서는 特約條項에 따라 保險의 目的과 동일한 구조, 질, 용도, 규모, 형태, 능력의 것의 再調達價額을 保險價額으로 하여 손해액을 평가하고 있다. 保險加入金額은 保險의 目的의 再調達價額으로 하며 付保比率의 제한은 없다.

(3) 保險金 支給

保險事故時 保險加入金額은 保險의 目的의 再調達價額의 80%를 상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방법이 달라진다.

- 保險加入金額이 保險의 目的의 再調達價額의 80%이상인 경우 保險加入金額을 限度로 再調達價額基準의 損害額 全額을 補償한다.
- 그러나 保險加入金額이 再調達價額의 80% 미만인 경우 再調達價額基準의 損害額에 대하여 保險加入金額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M=\frac{S}{V}L=\frac{\text{保險加入金額}}{\text{再調達價額}}\times\left(\begin{matrix}\text{再調達價額基準의}\\ \text{損害額}\end{matrix}\right)$$

최종적으로 保險者의 補償責任은 다음 금액중 최저액을 지급한다.

- 被害財產에 대한 保險加入金額
- 被害財產과 용도 및 성능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再調達價額
- 被害財產의 修理 또는 復舊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후 保險의 目的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는 再調達價額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고 普通約款에 의한 比例補償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계약자에게 復舊義務를 부과한 이유로서 본래 再調達價額保險이 인정되는 것은 被保險者가 保險의 目

22) 日本의 境遇, 住宅物件에 대하여 1964.7.1부터 販賣되었으며 1981.6.1부터는 一般,工場 및 倉庫物件에 까지 擴大하여 運營하고 있음(「損害保險實務講座 : 火災保險」, 東京海上火災(株), 1992, pp.334-337).

的을 계속 사용하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구하지 아니하면 再調達價額保險이 불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新價補償을 하게 되면 신구차액에 의한 현실적인 금전차익을 被保險者에게 부여하게 되어 道德的 危險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4) 保險料率

再調達價額特約을 첨부한 해당 보험의 목적의 火災保險料率에 대하여 추가할증없이 적용한다.

4. 價額協定保險方式

가. 槪要

價額協定保險은 火災保險에서 특약형태로 운영함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財物保險에 있어서 一部保險인 경우 손해보상시 계약자와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價額協定保險은 1)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자와 계약자간의 保險의 目的의 價額을 협정하는 旣評價保險方式을 도입하였고 2) 罹災時에 保險金은 保險加入金額 限度로 하여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는 實損補償方式으로 도입하였으며 3) 건물에 대하여는 罹災時에 손해액을 再調達價額 基準에 의한 新價損害擔保한다는 점에서 比例補償方式과는 차이가 있다.

(1) 實損補償

比例補償方式은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나 損害額 全額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罹災時點에서 全部保險이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시점에서 保險의 目的의 價額을 적절히 파악하고 보험기간중의 價額變動도 파악해 두어야 하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企業物件의 경우에도 보험자로부터 保險의 目的의 價額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제도이다. 특히 物價高騰期에는 一部保險 比率이 증대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계약자의 불만을 초래하기 쉽다는 결점이 있다.

同 保險에서의 實損補償方式은 付保比率條件附實損補償方式과 본래의 實損補償方式[23]과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즉 罹災時에 付保比率을 약정한 점에서는 付保比率條件附實損補償方式과 유사하나 보험기간중의 物價上昇에 따른 保險의 目的의 價額 上昇에 의하여 당초의 約定付保比率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保險加入金額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점에서는 實損補償方式과 유사하다. 約定付保比率은 보험기술적으로는 1%에서 100%까지 가능하나 60%, 80%, 100%등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家計保險에서 손해액 전액을 담보받고자 기대하면서 付保比率을 낮게 선택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자금으로서 전보할 것을 희망하는 계약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再調達價額損害擔保

再調達價額 損害擔保는 再調達價額(保險의 目的과 동일한 구조, 용도, 규모, 형태, 능력의 것으로 재축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費用)基準에 의하여 손해액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新價損害擔保는 火災保險의 전통적인 時價損害擔保에 비하여

23) 本來의 實損補償方式은 付保比率에 關係없이 保險加入金額을 限度로 하여 損害額 全額을 擔保하는 方式으로서 契約者側의 利害는 容易하나 適正한 保險料率을 정하는 것이 困難하며 契約者間의 保險料負擔의 公平性이 缺如되었다는 缺點이 있다.

支給保險金만큼 손해를 입을수 있는 物件과 동일한 물건의 再調達이 가능하다. 또한 家計性物件의 계약자는 손해액을 再調達價額基準에 의한 손해로서 이해하고 있는 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價額協定保險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건물에 대하여 新價損害擔保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 新價損害擔保에 대하여는 再調達價額擔保特約이 도입되었으나 그 보급율이 현저히 낮아 소비자에게 정착된 상품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보험자측의 홍보부족, 保險의 目的의 價額에 대한 적정한 평가기준의 不存在 및 引受條件, 支給條件의 각종 제약 등 상품의 복잡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同 保險에서의 新價擔保는 손해보험 기본원칙인 實際損害擔保原則에 반하고 또한 利得禁止原則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 이점에 대하여 1926년 獨逸 私保險監督局이 新價保險에 대한 공표한 견해를 보면 당초는 부적법하다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現在는 新價損害擔保가 保險契約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학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문제는 이 적법성을 근거한 이론구성 즉, 新價損害擔保에서 被保險利益을 고찰하게 되었다.[24]

(3) 保險의 目的의 價額評價

價額協定保險에서는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자와 계약자간에 保險의 目的의 價額을 評價하고 이를 보험증권에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契約時 評價는 계약자가 罹災時의 損害를 實損擔保받기 위하여 얼마만큼 부보해야 되는 가에 대하여 보험자의 전문적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기초하여 보험자와 계약자간의 합의하에 被保險者에게 충분한 保險擔保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契約時 保險의 目的의 價額을 평가하고 이를 협정한다는 점에서 旣評價保險과 관계가 있다.

旣評價保險은 당사자가 保險價額을 협정한 때에는 그 協定價額이 實際保險價額과의 일치여부에 관계없이 그 協定價額을 保險價額으로 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된 保險價額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價額協定保險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체결시에 保險의 目的을 평가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평가액을 정하기 때문에 旣評價保險과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이 評價額은 계약체결시에 保險加入金額을 설정하는 하나의 지표이며 損害額算定의 기초인 保險價額 또는 再調達價額은 旣評價保險의 경우와는 달리 一般 未評價保險인 火災保險과 동일하며 價額協定保險은 旣評價保險要素를 내포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의 旣評價保險은 아니다.

나. 運營現況[25]

(1) 適用物件

同 保險의 적용대상물건은 감가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住宅物件의 建物 및 이의 從物 또는

24) 이에 관하여 物保險說, 物保險과 費用保險의 合體說等이 있음. 安全海上火災保險(株), 「火災保險의 理論과 實務」, 1989, pp.201-202.

25) 日本의 境遇 減價率이 50%未滿인 住宅物件(收容家財 包含)과 建物延面積 660㎡未滿인 일반물건(職業割增 適用物件은 除外)에 適用하며 約定付保比率은 60%, 80%, 100%로 하여 運營하고 있으며 價額評價基準은 損害保險協會가 制定한 簡易評價基準에 의한다.(東京海上, 「損害保險實務講座(火災保險)」, 東京 有斐閣, 1992, pp.307-322)

附屬設備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은 新價에 의한 實損補償方式을 도입하고 있어 道德的 危險의 防止, 不當利得防止 觀點으로 부터 끌어낸 내용일 것이다. 따라서 감가율이 50%를 초과하여 사용불능으로 인정된 물건, 道德的 危險上 不適當하다고 인정되는 物件은 적용배제시켰다.

(2) 保險期間

이 契約의 主契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부대할 수 없으며 또한 보험기간중도에 부대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保險期間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계약시의 評價額과 사고시의 評價額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實損補償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3) 約定付保比率 및 料率

보험계약체결시에 約定付保比率을 60%, 80%, 100%중 하나를 약정하여 保險證券에 기재하며 보험기간중에는 約定比率을 변경할 수 없다. 料率은 年料率에 아래의 約定付保比率係數를 곱하여 적용한다.

〈표-4〉 價額協定擔保特約 料率表

建物構造	100%	80%	60%
1, 2급	1.0	1.2	1.4
3, 4급	1.0	1.1	1.2

5. 在庫價額通知保險方式

가. 概要

在庫價額通知保險은 企業이 소유하는 動產中 商品, 製品, 原料 等의 변동하는 在庫品을 합리적으로 火災保險에 부보하기 위하여 1970년 3월에 도입된 保險方式이다. 기업이 각종 財產을 火災保險에 부보하는 경우에 적정한 保險加入金額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保險加入金額의 결정시 착오가 있으면 一部保險이 되어 충분한 保險給付를 받을수 없기도 하며, 超過保險이 되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建物, 機械, 設備裝置는 보험기간중에 가액이 대폭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保險加入金額이 일정한 보험계약으로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在庫品에 대하여는 그 價額이 절대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普通의 保險契約으로서는 충분한 保險給付를 받을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保險에 付保하여야 한다.

① 연간 예상되는 最高在庫價額을 保險加入金額으로 한다.

② 연간 平均在庫價額을 예측하여 그 가액을 保險加入額으로 하고 在庫價額이 保險加入金額을 초과하면 超過額에 대하여는 短期契約을 체결한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여도 ①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불필요한 保險料를 지불하게 되며 ②의 경우에는 在庫價額에 대하여 부단한 주의를 가져야 하는 점과 短期料率 適用의 불이익을 피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변동하는 在庫品에 대하여 계약자의 번거로움과 保險料 負擔의 불이익을 제거하여 완전한 保險給付를 하기 위하여 在庫價額通知保險이 고안되었다. 이 방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保險加入額을 정하는 대신에 補償限度額을 정하고 이 금액을 한도로 하여 實損補償한다.

② 補償限度額에 의한 暫定保險料를 지불하고 통지된 在庫價額에 기초한 確定保險料와의 차액을 정산하므로 합리적인 保險料 負擔을 한다.

在庫價額通知保險은 英國에서는 Declaration

Policy, 美國에서는 Reporting Form, 日本에서는 通知保險이라고 한다. 日本[26]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계약자의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運營現況

(1) 契約方式

火災保險 普通約款에 부대하는 特約形態로 운영되고 있다. 特約明細書에는 보험의 목적, 수용건물, 보상한도액을 기재하고 補償責任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補償限度額의 設定 및 在庫價額 通知

在庫價額通知保險의 최대장점은 在庫價額이 변동하는 것에 관계없이 實損補償한다는 점이다. 保險加入金額은 항상 在庫價額과 함께 변하고 어느 시점에서도 在庫價額과 동액이다. 즉 항상 保險加入金額이 변동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계약자에 대한 保險金 支給은 과부족없이 이루어지나 保險者는 自己責任額이 불명확한 채 계약을 인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책임액의 최고한도로서 契約時에 補償限度額을 설정하는 것이다. 補償限度額은 保險의 目的을 수용하는 建物 1동마다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火災保險의 適用料率이 建物 1동마다 정하여지기 때문에 在庫價額의 파악도 建物 1동마다 하여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 보험을 이용하는 기업에서는 동일 종류의 在庫品 管理를 建物 1동 또는 탱크 1기로서가 아니고 구내단위 또는 사업소 전체로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契約方式의 도입도 요청된다.[27]

在庫價額通知方法은 매월 특정일에 평가하고 그 날로 부터 2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建物 1동마다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在庫管理를 建物 1동마다 하지 않고 2동이상 建物을 포괄하여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收容建物마다의 料率中 最高料率이 適用料率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 또한 補償限度額이 收容建物 1동마다 정해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무의 번잡함을 피할수 없다.

(3) 保險料 精算

同 保險方式은 계약체결시점에서 豫置保險料를 받고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確定保險料를 산출하여 保險料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자의 保險料 負擔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預置保險料(Deposit Premium)는 補償限度額의 75% 상당액에 保險料率을 곱하여 산출하며 保險責任의 시기와 관련(保險責任은 豫置保險料 영수시에 시작한다), 豫納保險料로서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特約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기간 만료시에 確定保險料에 의하여 정산하는 점은 假拂保險料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確定保險料는 通知價額의 平均價額에 保險料率을 곱하여 산출하며 豫置保險料의 2/3를 하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通知價額이 補償限度額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平均價額에 산입하고 있으나 補償限度額이 곧 保險加入金額이라는 점에서 규정적용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28]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豫置保險

26) 東京海上, 「損害保險實務講座(火災保險)」, 東京 有斐閣, 1992, pp.343-352.

27) 이러한 境遇를 對備하여 日本에서는 第2方式(1957년), 第3方式(1961년), 第4方式(1963년), 下請包括方式(1964년), 自社下請包括方式(1982년), 貯油所方式(1965년)等의 特殊方式을 導入하여 運營하고 있다.

28) 日本의 境遇 通知價額이 補償限度額을 超過하면 超過部分에 대하여 平均在庫價額 算出時에 包含하지 않고 있다.

料와 確定保險料를 비교하여 確定保險料가 많으면 추징을, 적으면 환급을 한다.

(4) 保險金 支給

在庫價額 通知保險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保險加入金額이 在庫價額과 함께 변동하고 어느시점에서도 全部保險이 된다는 기본적인 배경이 있으므로 比例補償槪念은 배제되고 同 保險 特有의 規定이 도입되어 있다. 損害額이 補償限度額을 초과한 경우에는 補償限度額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超過額은 보상하지 않는다. 普通의 保險契約과의 分擔契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保險加入金額에 의한 안분방식에 의하여 이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정한 기일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초회 통지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에서와 같은 방법에 따른 補償額에 대하여 補償限度額에 대한 罹災時點에서의 實際在庫價額 比率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保險金으로 지급한다.

同 保險에서는 保險金이 지급된 후에도 報償限度額이 감액되지 않는 自動復元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6. 支給方式別 比較

火災保險은 保險事故가 발생한 장소와 때의 保險의 目的의 實際 經濟的 損害를 보상한다. 계약

〈표-5〉 國文約款 補償方式 要約

구 분	80% Co+比例補償	再調達價額	實損補償	價額協定	在庫價額	協定保險
운영방식	보통약관	특별약관				
적용물건	주택, 일반, 창고물건	전물건	공장물건	주택물건	일반, 공장, 창고물건	주택물건
적용대상	建物, 機械, 設備, 裝置	- 建物, 機械, 設備, 裝置 - 집기, 備品	建物, 機械, 設備, 裝置	建物, 附屬設備	상품, 원료, 제품 등 동산	서화, 골동품 조각물, 원고, 도서, 증서
적용조건	제한 없음, 특약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한 적용됨	- 減價率 50% 이하 - 3, 4급 건물은 감가율 30% 이하만 적용	건물구조 1, 2급만 적용	減價率 50% 이하 부보율 60%, 80%, 100%중 선택	매월 재고가액을 통지해야 함	제한 없음
보험금액	時價	再調達價額	時價	再調達價額	時價	時價
보험요율	적용요율	적용요율	적용요율×1.2	- 1,2급 건물 80% 1.2 60% 1.4 - 3,4급 건물 80% 1.1 60% 1.2	적용요율	적용요율
보상방식	- 부보비율이 80% 이상: 실손보상 - 부보비율이 80% 미만: 비례보상	- 부보비율이 80% 이상: 실손보상 - 부보비율이 80% 미만: 비례보상	- 부보비율이 80% 이상: 실손보상 - 부보비율이 80% 미만: 비례보상	보험금액(재조달가액×부보비율)한도로 전액보상	보상한도액내로 실손보상	실손보상

주 : 공장물건은 보통약관에서 80%실손보상조항없는 비례보상방식으로 운영됨.

자는 火災危險을 보험자에게 전가시 계획적이든 무계획적이든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와 공유하는 결과가 흔히 발생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준비한 것이 Coinsurance, LOL, Deductible Clause이다.

現在 建物 및 機械設備, 裝置 等의 繼續使用財에 대한 지급방식은 80%-Coinsurance를 가미한 比例補償方式이 普通約款에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80%-Coinsurance 方式과 再調達價額方式, 價額協定保險方式은 特約形態로 운영되고 있다. 動產에 대하여는 在庫價額通知保險方式과 協定保險價額方式이 특약으로 운영되고 普通約款에서는 比例補償方式이 적용된다.

가. 建物, 機械, 設備裝置

建物, 機械設備裝置는 계약자의 기업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산으로서 火災事故를 입은 경우 이와 同形, 同質의 新品의 것으로 복구를 가장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욕구이다. 그러나 부보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罹災時 復舊資金 調達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普通約款의 比例補償方式이외의 再調達價額, 實損補償, 價額協定特約을 이용하는 경우, 이재시 현금흐름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危險轉嫁方法이 된다.

예를 들어 保險價額이 100억원, 再調達價額이 120억원, 豫想可能最大損害額이 保險價額의 90%인 紡織工業의 建物을 0.234% 料率로 부보했을 경우에 각 지급방식별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단, 價額協定담보 特約이 工場物件에 적용한다라고 가정한다).

建物의 價額은 일반적으로 再調達價額에서 經年에 따른 減價額을 뺀 價額이 되기 때문에 補償方式의 선택에 따라 보험금에서 차이가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比例補償方式과 實損補償方式은 保

〈표-6〉 補償方式別 比較

구 분		普通約款方式	再調達價額特約	實損補償特約	價額協定特約
계약조건	保險目的 1級建物	再調達價額 : 120억원, 保險價額 : 100억원 PML : 保險價額의 90%, 經過年數 : 1年, 經年減價率 : 16.0%			
	保險條件	付保率 80%, 事故率 : 0.02% , 危險集團數 : 10,000건, 料率 : 0.234%			
	保險金額	80억원	96억원	80억원	96억원
손 해 액		90억원	108억원	90억원	108억원
계약자	保險料	18,720천원	22,464천원	22,464천원	22,464천원
	保險金	72억원	96억원	80억원	96억원
	保險保護率	72%	96%	80%	96%
보험자	保險料 計	187,200백만원	224,640백만원	224,640백만원	224,640백만원
	保險金 計	144억원	192억원	160억원	192억원
	損害率	7.7%	8.5%	7.1%	8.5%

주 : 保險保護率은 保險金/保險價額을 意味한다.

險의 目的의 實際價額(Actual Cash Value)基準의 보상방식이므로 再調達價額方式과 價額協定保險方式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再調達價額方式과 價額協定保險方式은 계약자의 保險料 負擔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 되나 再調達價額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罹災時 資金調達方法으로는 최적의 방법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험금과 관련된 特殊契約方式의 선택은 建物의 耐火性能, 계약자의 危險管理能力 및 資金調達能力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支給方式別 付保率에 따른 保險保護率과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保險價額이 계약시와 사고시에 同一, 時價基準의 損害比率이 再調達價額基準에도 同一, 適用物件에 제한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 〈그림-2〉와 같이 나타난다.

分損(損害額/保險價額<1)인 경우, 比例補償方式의 保護率(保險金/保險價額)은 付保率(保險加入金額/保險價額)에 비례증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保護率은 1미만이다. 그러나 기타방식은 付保率 80%미만까지는 비례증가하나 80%이상부터는 일정하며 保護率은 1에 근접하고 比例補償과 같이 1미만이다. 즉 付保率 80%미만에서는 比例補償< 再調達價額<80%實損補償<價額協定方式 순이며 80%이상에서는 比例補償<80% 實損補償<再調達價額=價額協定方式 순이다.

全損(손해액/保險價額=1)인 경우의 保護率은 比例補償方式은 付保率이 100%일때만 1이고 그 미만에서는 항상 1미만이다라는 점이 分損인 경우와 다르다. 其他方式은 80%미만까지는 付保率에 따라 비례증가하나, 80%초과시에는 價額協定方式의 比例增加가 계속 이어지며 再調達價額, 實損補償方式은 일직선으로 나타나 付保率에 관계없이 保護率은 항상 1이다. 특히 付保率 80%일때는 實損補償方式의 保護率이 1이되고 再調達價額方式은 1을 초과한다.

(그림-2) 補償方式別 保險保護率과 付保率과의 關係

〈분손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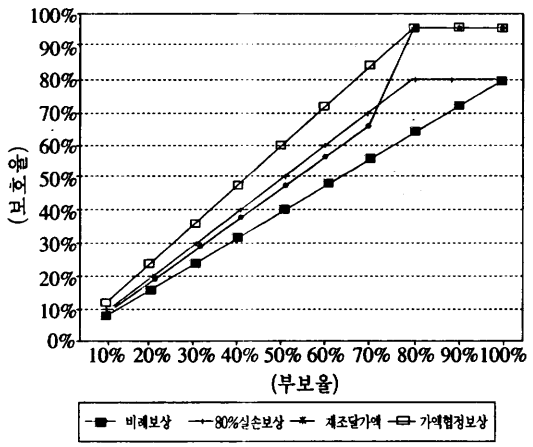

〈전손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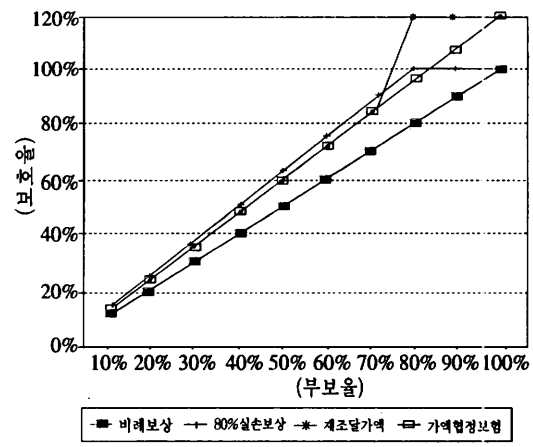

나. 動産

動産의 경우에는 保險의 目的의 數量, 價額變動 等이 커 價額評價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비례보상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在庫價額通知保險方式과 協定保險價額特約이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協定保險價額特約은 住宅物件의 골동품, 서화, 도면 등의 動産에 대하여 旣評價保險方式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罹災時 住宅所有 契約者의 資産을 충분히 보험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在庫價額 通知特約은 普通約款에서 80% 實損補償이 적용되지 않는 原料, 商品, 半製品, 製品, 副資材 等을 實損補償하기 위한 特殊保險方式이다. 同特約은 動産의 성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月間在庫價額을 통지하므로 계약자의 회계처리방법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V. 保險金 支給方式의 改善方向

우리나라의 保險市場環境은 金利自由化 實施, 1994.4.1부터의 保險價格自由化 實施, 保險市場 開放, 再保險 自由化 等의 급속한 環境變化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火災保險은 95.4.1부터 一般, 工場, 倉庫物件 등의 企業性物件에 대하여 2년간 範圍料率이 운영되고 97.4.1부터 完全 自由料率로 전환되게 된다. 價格自由化와 더불어 保險市場의 개방이 된다면 海外保險社의 國內市場 進入과 國內保險者의 해외진출이 예상되므로 商品 및 價格競爭力 強化,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충실은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火災保險은 未評價保險의 比例補償方式이 근간을 이루고 있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再調達價額方式, 實損補償方式, 價額協定保險方式 等의 特殊契約方式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保險環境變化에 대응하고 계약자의 니드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의 개선 또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國內 火災保險 付保物件은 주로 木造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全損確率이 적은 不燃構造, 耐火構造가 大部分[29]이고 또한 과거의 大型事故를 경험한 뒤부터 消防法 등의 基準強化, 경제주체들의 危險管理意識 高揚 등으로 인하여 잠재위험성에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러나 火災保險 商品은 이러한 변화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계약자의 니드에 부응하고 保險市場 開放등에 대비하여 國文約款의 保險金 支給方式의 改善方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實損補償特約의 付保比率의 多樣化 및 適用物件 擴大

同 特約은 國文 및 英文約款에 現在 運用되고 있다. 英文約款은 付保比率을 당사간에 약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國文約款은 付保比率을 80%로 단일화하여 工場物件에만 적용하고 있다. 현대에는 耐火構造建物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경우 付保比率의 다양화(70%, 60%, 50%, 40%) 및 住宅, 一般, 倉庫物件에 확대적용하여 계약자의 니드에 부응하여야 한다.

29) '92年度의 新規建築物(95,755件, 總延面積 : 67,373,878㎡)中 木造建物의 比率은 件數對比 0.2%, 總延面積 對比 0.06%임 (內務部, 「韓國都市年鑑」 1993, p.273)

2. 保險金額 自動調整價 額協定擔保特約으로 補完

住宅物件의 建物에 적용하는 價額協定保險特約은 再調達價額基準으로 實損補償하는 制度로서 保險金 支給方式中 保險制度의 效用이 가장 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계약자가 罹災復舊計劃을 전적으로 保險에 의하는 경우 罹災時 保險의 目的을 신축 또는 재구입시와 동형, 동질의 것으로 復舊하는데에는 경과된 기간동안의 物價上昇, 建築費上昇 等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비용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價額協定保險特約을 住宅物件과 같이 위험이 보편화된 一般物件中 作業割增과 職業割增을 적용하지 않는 事務室建物 등에도 확대적용하고 物價上昇, 建築費, 人件費 上昇 등의 인플레이션정도에 따라 保險加入金額이 自動調整되어 罹災時 全部保險 形態의 완전한 復舊資金調達이 가능케하여 보험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保險者側面에서는 保險金이 比例補償보다 많이 지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保險料도 保險金에 상응하는 만큼 더받게 되므로 운용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3〉 自動調整 保險金額附 價額協定擔保特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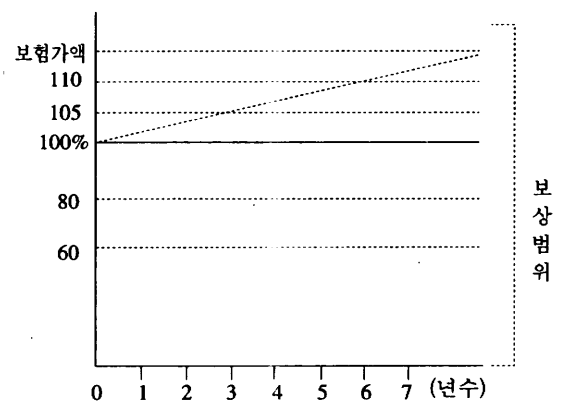

오래전부터 英國(Escalator clause),[30] 美國(Inflation Guard Clause), 日本 등에서는 폭넓게 영위되고 있다. 日本[31]의 경우 價額協定保險 擔保特約에 保險加入金額이 자동조정되는 상품을 日本火災와 同和火災가 공동개발하여 '94.4.1부터 판매하고 있다. 특히 日本火災는 價額協定保險特約實績이 전체에 대하여 30%에 이르렀으나 동 상품판매로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英國의 경우 계약자가 補償金 또는 復舊金額(The Value at Risk)인 保險加入金額을 보험기간 개시일에 정하며 보험기간동안의 인플레이션율을 최고 20%까지 약정한다. 보험기간동안 약정된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保險加入金額은 자동적으로 증가하여 경과된 보험기간에 대하여 약정한 인플레이션율을 日割計算하여 保險加入金額이 증가하게 된다.

3. Loss Sharing 契約方式 導入

Loss Sharing 契約方式으로서 Deductible, Limit of Liability, Co-insurance 등을 주요국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다. 國內에서도 英文約款에는 이들 제도 전부가 운용되고 있는 반면, 國文約款에는 80% Co-insurance만 도입되었고 나머지 방식은 도입되지 않았다. Limit of Liability는 나중에 도입하더라도 Deductible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계약자의 保險料 輕減方法이 될 뿐만 아니라 道德的 危險 輕減 등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으므로 먼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30) Edwin Gamlen and Harold Francis, *Fire Insurance thoery and practice*, Buckley Press Ltd, London, 1991, pp.95-96

31) 損害保險事業硏究所, 損害保險硏究, 1994.5, p.197-198

料率體系가 유사한 日本의 경우 1988년도에 一般 및 工場物件에 대하여 전면 도입된 바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32]

4. 保險者의 서비스 機能 充實

火災保險은 保險付保方式에 따라 급부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危險管理能力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계약자에게 Risk Survey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합리적인 最適付保方式의 選擇 및 Loss Control Service을 충실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大韓損害保險協會, 「損害保險史料(2)」, 1987

韓國保險公社, 「韓國保險史」, 1985

梁承圭, 「保險法」, 삼지원, 1989

省野良樹, 「保險學入門」, 同文館, 1985

大林良一, 「保險理論」, 春秋社, 1979

秋山惠一, 「火災保險論·再保險論講義資料」, 損害保險事業研究所, 1983

安田火災(株), 「火災保險の理論と實務」, 海問堂, 1989

東京海上(株), 「損害保險實務講座(火災保險)」,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1992, 「火災保險論」,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1992

鈴木讓一, 「保險論」,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1988

龜井利明, 「保險總論」, 法律文化社, 1991

Edwin Gamlen, Harold Francis, *Fire Insurance Theory & Practice (7th ed)*, buckley Press, 1991

F.H Hones, *Propery Insurance Underwring and Claims*, the CII Tuition Service, 1981

Holton Robert B., *Underwriting (3th ed)*, National Underwriter, 1987

Mehr Robert I. and Cammack Emerson, *Principles of Insurance (7th ed.)*, Irwin Series in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1980

Mehr Robert I., *Fundamentals of Insurance*, Irwin, 1983

Mowbray Albert H.외 2인, *Insurance (6th ed.)*, McGraw Hill Inc., 1979

R.L. Carter, *Risk Management*, the CII Tuition Service, 1981

Rejda George E., *Principles of Insurances (2nd ed.)*,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6

Vaughan Emmett J., *Fundamantals of Risk and Insurance (5th ed.)*, John Wiley & Son, 1989

Webb B.L., Rokes W.P., Baglini N.A., *Insurance Copmpany Operations, Vol.* I, II, *3rd ed.*, American Institute for Property and Liability Underwriters, 1984

Willaims C.Arthur,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Vol. 1, 2)*, American Institute for Property and Liability Underwriters, 1981

Williams C.A. and Heins R.M.,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15th ed.)*, McGraw Hill Book Co., 1985

32) 自己負擔金의 設定은 工場物件에 대하여는 1構內 單位, 一般物件에 대하여는 하나의 建物中心으로 하여 500萬円(3% 保險料割引), 1,000萬円(5%), 3,000萬円(10%), 5,000萬円(14%), 1億円(19%)중 어느하나를 自己負擔金으로 設定하도록 되어 있다. 「火災保險免責金額設定契約に關する特約規定」, (東京 : 損害保險料率算定會, 1988.1.1)